



근로기준법[시행 2018. 3. 20.][법률 제15513호, 2018. 3. 20., 일부개정]

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,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020. 1. 1.부터 2년에 걸쳐 시행되도록 시행시기를 따로 정하였습니다.

이에 **2022.1.1.부터** 3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적용되어 **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**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**전면 확대되어 적용**됩니다(제55조 제2항).

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(제110조 제1호, 제55조 제2항).

관련구성원

기영석

변호사

02-316-4021

ysgi@shinkim.com

박성기

변호사

02-316-4280

skipark@shinkim.com

김종수

변호사

02-316-1678

jsokim@shinkim.com